


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

-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.
-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04월 01일
오류제1동장 

연번	성명	주소	발급기간	공고기간
	생년월일			공고사유
1	김** 07.03.**	고척로3길 7 (오류동)	2024.04.01.~ 2025.03.31.	2024.04.01.~ 2024.05.06. 폐문부재